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의 설립 및
갯벌세계유산의 점검·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등〉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878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1.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의 설립 근거 마련 등	3
2. 갯벌세계유산의 점검 ·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11
3. 부칙	14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7일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021년 전라남도 순천시와 신안군 등을 포함한 총 5개 지역의 4개 갯벌(보성·순천갯벌, 신안갯벌, 서천갯벌, 고창갯벌)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의 갯벌(이하 “갯벌세계유산”이라 함)을 통합적으로 보전·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함)을 신안군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갯벌세계유산은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음에도, 현행법은 갯벌세계유산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갯벌세계유산의 보호·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보전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갯벌세계유산에 대해 조사하고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그 가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에 대해 “갯벌세계유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보전원의 사업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갯벌세계유산의 보전 등에 대해 조사 및 점검·평가 등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의 설립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갯벌세계유산의 정의를 신설하고,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7조, 제30조의2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갯벌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국내의 갯벌을 말한다.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3. (생략)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설>

<신 설>

14. 갯벌세계유산의 현황과 관리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장의2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 등
제30조의2(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의 설

립) ① 갯벌세계유산의 통합적 보전·관
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1. 갯벌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에 대한 조사·연구

2.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의 이행

3. 갯벌세계유산 관련 국제 교류협력 촉
진 및 네트워크 구축

4. 갯벌세계유산과 관련된 교육, 홍보와
출판물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④ 보전원은 보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⑤ 원장은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

제36조(국고보조)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
 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
 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
 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6. (생 략)

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
히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원의 운
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전원을 지도·감
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다.

⑩ 보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제36조(국고보조) -----

 -----.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시행계획 및 제14조의 사업계획에 따른 갯벌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신 설>	6의3. 제30조의3에 따른 갯벌세계유산의 조사 및 점검·평가 업무
<신 설>	6의4. 갯벌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국내외 교류 활동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우리나라의 갯벌은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 등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그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보성·순천 일대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음.¹⁾

[표] 유네스코 갯벌세계유산 등재 현황

(단위 : km²)

명 칭	합 계	유산지역	완충구역*		
			소 계	육 역	해 역
총면적	2,030.03	1,284.11	745.92	585.1	160.8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40	32.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3.82	14.98
신안 갯벌	1,773.4	1,100.86	672.54	573.22	99.32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406	13.95

* 주 :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

*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정리

- 1) 2021년 7월 유네스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등재된 유산지역은 1,284.11km², 완충구역은 745.92km²임.

이와 같이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갯벌세계유산지역의 확대와 통합 관리체계 마련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갯벌세계유산을 점검·관리하고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갯벌세계유산의 통합적인 보호·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5년 잠정)까지 9개 철새 중요지역(군산, 부안, 인천, 무안, 고흥, 여수, 화성, 아산, 당진)에 대한 유산지역 확대(2단계 확대) 권고 ② 2단계 확대 유산지역 간 경계를 명확히 하며, 필요하다면 완충구역 확대 ③ 1단계 및 2단계 확대 유산지역을 포함하는 <u>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체계 구축</u> ④ 유산의 보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관리 ⑤ (권장) 멸종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국가들과 중국 ‘황해-보하이만 철새보호구(‘19년 등재)’와 협력 강화 |
|---|

이에 개정안은 ① 갯벌세계유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②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의 설립·운영과 그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갯벌세계유산의 생태적 가치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먼저, 안 제7조는 「갯벌 기본계획」에 ‘갯벌세계유산의 현황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함)」 제12조²⁾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립하는 세계유산 종합계획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갯벌세계유산 관리에 관한 갯벌 기본계획의 내용이 세계유산 종합계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세계유산법」상 종합계획의 수립은 문화재청이 담당하나, 갯벌세계유산과 관련된 시행계획 및 사업 계획의 이행 및 점검·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다음으로 해양수산부는 갯벌세계유산지역 확대 및 통합관리체계 마련 등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의 건립을 추진 (2023~2026년)하고 있는데(첨부1 참고),

안 제30조의2는 이와 같은 보전원의 설립 근거와 역할을 법률에 규정 하고, 보전원의 운영 경비 지원과 해수부장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원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같은 조 제8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보전원에서 수행 하는 업무는 주로 국가사무를 위한 것이므로 해당 조문은 국가사무의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등의 부담을

2)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우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³⁾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표] 보전원 설립근거 규정 정리

구분	주요 내용
사업 (제30조의2 제3항)	보전원이 수행하는 사업 명시 ① 갯벌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에 대한 조사·연구 ②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의 이행 ③ 갯벌세계유산 관련 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④ 갯벌세계유산과 관련된 교육, 홍보와 출판물의 제작·보급 ⑤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임원	보전원장 1명을 포함한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함
업무요청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경비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공유재산 무상양도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3)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4. (생략)

[표] 보전원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4년간) ○ (사업비) 322.7억원(국비) ○ (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일원 ○ (건축규모) 부지면적 41,221㎡/건축 연면적 7,834㎡/지상2층 ○ (주요시설) 전시교육시설, 연구시설, 행정시설
직원(인)	원장 1인, 부원장 1인, 실장(팀장) 5인 등 총 30명
경과	○ ('22. 12.)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23. 4.)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신규등록 보고서 제출 ○ ('23. 4~5.) 보전원 운영 업무협약 체결(해수부-전라남도-신안군) ○ ('23. 12.) 보전원 설계용역 착수(조달청, 용역사) ○ ('24. 6.) 보전원 계획설계 및 적정성 검토 완료(조달청) ○ ('24. 8.) 보전원 중간설계 검토중 ('22. 12.) ○ ('25. 6.) 보전원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 (~'27) 보전원 공사 준공 및 운영

2. 갯벌세계유산의 점검·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수부장관의 갯벌세계유산 보전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평가 등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3(갯벌세계유산의 조사 및 점검·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조사하고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1. 갯벌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이전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의 이행 3. 그 밖에 갯벌세계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갯벌세계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

	<u>을 하는 경우 그 승인에 따른 행위가 갯벌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점검·평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갯벌세계유산의 보전 등에 대한 조사·점검·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갯벌세계유산의 보전 및 관리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30조의3제8항에서는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습지보전법」이 아닌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운 절차(심의)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이고, 심의 절차·내용 등을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하므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관련 조문(「습지보전법」 제13조) 정리

구분	주요 내용
제13조제1항	습지보호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
제13조제2항	습지주변관리지역이나 습지개선지역에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 제한
제13조제5항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3. 부칙

- 개정안 부칙은 법률의 시행일 및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의 설립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전원의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전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③ 준비위원회는 보전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보전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 당시의 보전원 원장은 제3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전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제4항에 따라 임명된 보전원의 원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가 끝난 때에 준비위원회는 해산되고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전원의 설립비용) 국가는 보전원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물품의 무상 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가 관리(보전원의 건립·운영에 한정한다)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보전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 및 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보전원은 준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등기 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준비위원회의 명의를 보전원의 명의로 본다.

제6조(예산안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보전원 설립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보전원 예산서는 준비위원회가 작성·제출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보전원은 보전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종전 준비위원회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보전원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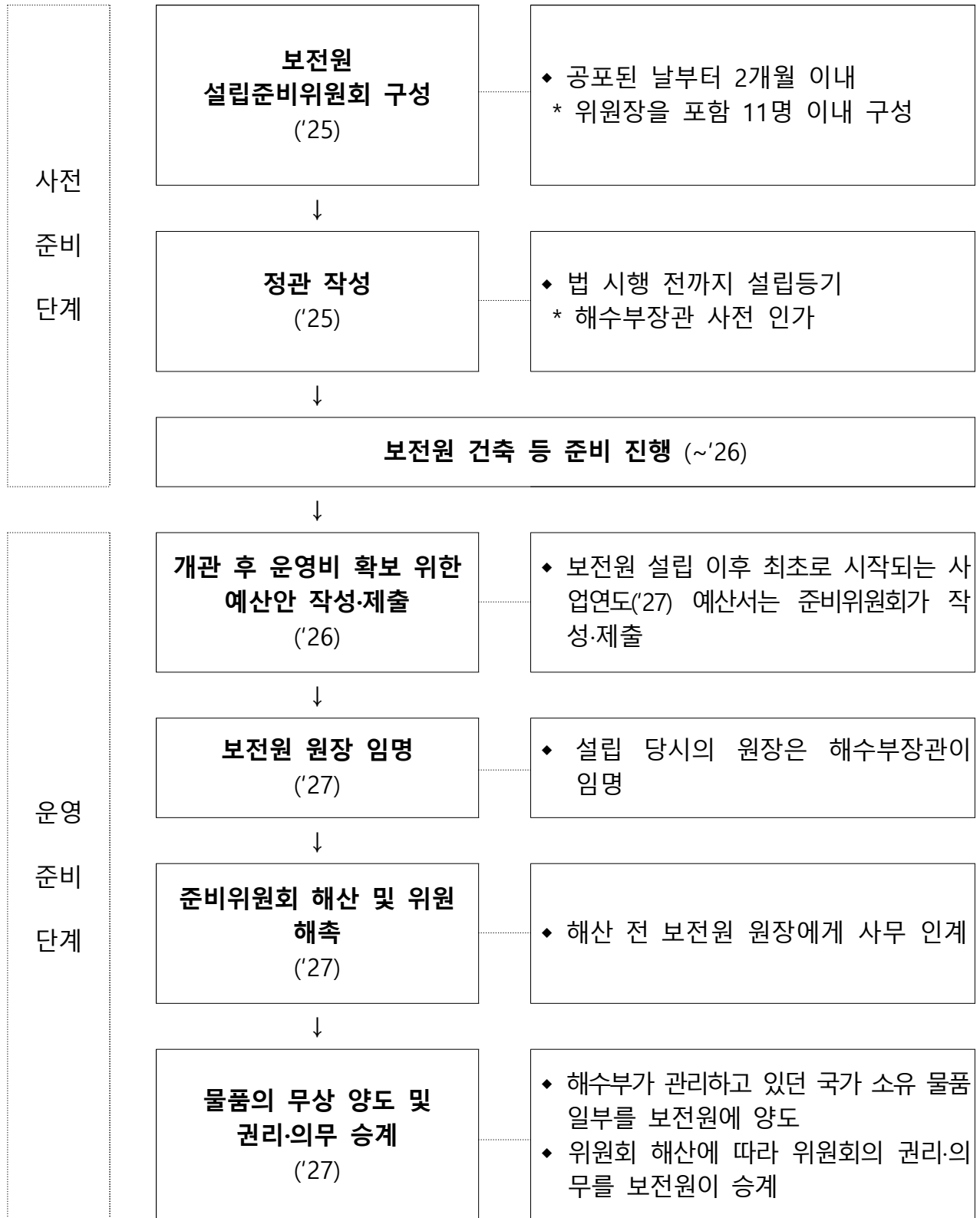
□ 개정안 부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전원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과 보전원의 설립등기, 보전원 설립비용 부담, 설립준비위원회와 보전원 간 권리·의무의 승계, 예산 집행의 경과조치 등 보전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이는 법률의 시행을 위해 법인 설립과 같은 법적인 행위가 필요한 경우 그 준비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에 법률을 바로 시행하기 위한 입법형식⁴⁾ 중 하나로 보임.

- 유사 입법례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04호, 2019.12.3.) 부칙이 있음.

4) 새로운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인 설립 요건에 따라 필요한 준비행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법인이 설립되려면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가 필요하다. 이 행위가 종료되어야 법인이 설립된 것이므로 법률 시행일에 법인이 설립되도록 하려면 시행일 전에 이러한 행위가 완료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주체, 절차, 내용 등을 준비규정에 둬.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p.842)

[표] 개정안 부칙(보전원의 설립준비) 진행절차



*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

□ 한편, 안 부칙 제6조(예산안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는 보전원 설립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예산서는 준비위원회가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⁵⁾를 고려해 조문 제목을 ‘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8

5)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04호, 2019.12.3.) 부칙 제6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과학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해양과학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한국의 갯벌*'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멸종위기 철새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21.7)

* (1단계)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갯벌 1,284km²

-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결정 권고사항인 유산지역 확대 및 연속유산의 통합관리체계 마련 등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필요

* (사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백제세계유산센터, 경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4년간)
- (사업비) 322.7억원(국비)
- (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일원
- (건축규모) 부지면적 41,221m²/건축 연면적 8,020m²/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전시교육시설, 연구시설, 행정시설

□ 건축계획

- (총사업비) : 32,270백만원(예비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구분		사업비
공사비	건축공사비	25,953	용역비	설계비	1,924
				감리비(건설사업관리)	2,229
				소계	4,153
	대지조성공사비	508	기타비용	인증비용	304
				예비비	1,352
	소계	26,461		소계	1,656
			총사업비		32,272

○ (연차별 예산소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예산	32,270	2,000	8,714	12,908	8,648

○ (건축규모) :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본관) 및 교육·안내 야외시설

구 분	내용		
부지면적	41,221m ²	지하 1층 (수장고 및 보관창고)	600m ²
		1층 (로비, 전시실, 체험실)	3,000m ²
건축면적	3,900m ²	2층 (대강당, 특별전시관)	1,600m ²
		3층 (사무실, 회의실, 연구실)	800m ²
연 면 적	8,020m ²	공용공간 (홀, 화장실, E/V, 창고 등)	2,020m ²